

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88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6. 7. 2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 교부·열람을 재량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금고지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 교부·열람을 강행규정으로 개정(안 제9조제2항)

(현행)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

(개정)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

나.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준말로 변경

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가.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

나.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48조

다.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(행정안전부예규)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 평가: 개선사항 없음(가족복지과-21981호, 2026. 6. 1.)

라. 입법 예고: 2026. 5. 26. ~ 2026. 6. 16.(21일간) / 의견없음

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 중 “지정하여야”를 “지정해야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평가하여야”를 “평가해야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통지하여야”를 “통지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열람하게 할 수 있다”를 “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지정하여야”를 “지정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“통지하여야”를 “통지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제결하여야”를 “제결해야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변경하여야”를 “변경해야”로, “결정하여야”를 “결정해야”로 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보고하여야”를 “보고해야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공개하여야”를 각각 “공개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중 “포함하여야”를 “포함해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금고지정의 방법)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(이하 “금고”라 한다)을 경쟁방법	제3조(금고지정의 방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지정해야 ----. --

에 따라 <u>지정하여야</u> 한다. 다만,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,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. ② (생략) 제4조(금고지정의 평가기준) ① (생략)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<u>평가하여야</u>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4조(금고지정의 평가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 <u>평가해야</u> -----.
제9조(금고지정의 절차)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 공보와 구 인터넷 홈	제9조(금고지정의 절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페이지에 공고하고, 관련 금융기관에 <u>통지하여야</u>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한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. ③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4조에 의한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·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·평가하고,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<u>제출하여야</u> 한다.	<u>통지해야</u> -----.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</u>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출해야</u> -----.
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<u>지정하여야</u> 한다. ⑤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결과를 구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<u>통지</u>	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정해야</u> -----. ⑤ ----- ----- ----- ----- <u>통지</u>

<u>하여야</u> 한다.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<u>체결하여야</u> 한다.	<u>해야</u> 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체결해야</u> -----.
⑥ (생략) 제12조(금고약정의 해지) ① 구청장은 약정서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<u>변경하여야</u>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<u>결정하여야</u> 한다.	⑥ (현행과 같음) 제12조(금고약정의 해지) ① ---- ----- ----- <u>변경해야</u> ----- ----- <u>결정</u> <u>해야</u> -----.
② (생략) 제13조(금고운용 보고) ①·② (생략) ③ 구청장은 금고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에 <u>보고하여야</u> 한다.	② (현행과 같음) 제13조(금고운용 보고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보고</u> <u>해야</u> -----.
제14조(협력사업비 공개)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홈페이지와 구 공보에 <u>공개하여야</u> 한다. ② 구청장은 협력사업비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에 따라 세입	제14조(협력사업비 공개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개해야</u> -----. ② ----- -----

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
하며,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
에는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
에 포함하여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----- 공개해야 ---

-- 포함해야 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근거법규

□ 「지방회계법」

제38조(금고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,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2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3. 「산림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4. 「새마을금고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
5.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

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,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.

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

제48조(금고 업무의 약정)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
2. 주민의 이용 편의

3. 금융기관의 재무구조

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”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.

1.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
2.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
3.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
4.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
2.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
3.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
4. 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
5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

4. 금고의 지정절차

[2]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

-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
-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
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 -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·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2.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

3.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,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

4.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사업의 범위와 내용 내에서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, 별도의 예산이 추가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

3. 작성자

- 소 속: 세무1과
- 직 급: 지방세무주사
- 성 명: 양고운
- 연락처: (052)290-3352